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 발의연월일: 2016. 6. 7.

발 의 자: 박주민·강병원·강창일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김성수・김영주・김영진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김종대 · 김종민 · 김종인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노회찬 • 도종환 • 문미옥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박 정・박찬대・박홍근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서영교・서형수・설 훈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신동근 · 신창현 · 심상정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안호영・양승조・어기구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윤관석 • 윤소하 • 윤호중 유후덕 • 이개호 • 이상민 이석현 · 이언주 · 이용득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이정미 · 이종걸 · 이찬열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이 훈·인재근·임종성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전혜숙 · 정성호 · 정세균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진선미・진 영・최명길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추혜선 • 표창원 • 한정애 홍영표 · 홍익표 · 황 희 의원(12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여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특조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 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 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법 목적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 회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 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및 제7조의2).
-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도록 함(안 제6 조).
- 다.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9조).

법률 제 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4·16세월호참사의"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돼 육상거치 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이하 "정밀조사"라 한다) 등 4·16세월호참사의"로 한다.

제6조제5항 본문 중 "1년으로"를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를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5조제1호·제3호·제9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활동기간을 위원회의 정밀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제5조(위원회의 업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 한 감독 및 인양돼 육상거치 에 관한 사항 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이하 "정밀조사"라 한 다) 등 4·16세월호참사의---2. ~ 9. (현행과 같음) 2. ~ 9.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 기간으로----. <단서 삭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 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 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 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 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 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 고 같은 조에 따른 위원회 활 동기간 내에 정밀조사가 완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 는 제5조제1호·제3호·제9호 등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기간을 위원회의 정밀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 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 하지 않는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유)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행 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 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